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보도자료 | 2015. 10. 14(수) | |
| | 작성 · 문의 | 세월호 피해지원·추모사업 지원단 이승규 과장 / 김도훈 사무관 (Tel. 044-200-6304) |
| 10.14(수) 09:30 (회의종료) 이후 사용 | | |

세월호 피해지원 · 추모사업 차질 없이 진행 중

-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추모위원회 열어 추진상황 점검
- 9월말 기준, 긴급복지지원 · 생활지원금은 97% 이상 집행, '마무리 단계'
- 내년 4월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개관, 안산·진도 해양안전체험시설 내년 착공

□ 정부는 10.14일(수)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(위원장) 주재로 제4차 '4·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' (이하 위원회)를 열어, 세월호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.

○ 위원회는 지난 4월 1·2차 회의를 통해 「4.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규정된 생활지원금 등 세월호 피해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심의·확정하였으며,

- 피해지원사항 안내를 위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(5.10~5.19, 인천·제주·서울)를 개최하고 상시 의견수렴을 위해 '세월호 피해·추모 지원단'내 피해지원 안내콜센터(044-200-6330~6331)를 설치·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 이행을 추진해왔다.

○ '15.9월말 현재, 긴급복지지원금 275가구(99%, 716백만원), 생활지원금 435가구(97%, 930백만원), 정신질환 등 검사·치료비 2,425건(464백만원) 등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의료 지원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,

- 향후, 분야별로 미지급 대상자들을 파악하여 개별안내 등 지원사항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점검·관리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안산·진도 지역경제활성화, 안산 공동체회복프로그램 개발 등 피해지역 지원사항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.

※ 참고 : 피해지원 추진실적

□ 한편, 추모사업은 지난 2차 위원회(4.22)에서 확정된 '추모사업 추진 방향'을 바탕으로, 제1·2차(5.27, 9.7) 추모 분과위원회에서 인천·안산·진도 지역별 추모사업 기본방향을 확정하였다.

○ 인천의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지난 8월 착공되어 내년 4월 개관할 예정이며, 안산·진도의 추모시설은 애도 및 추모와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하는 시설로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
○ 이와 함께, 안산의 해양안전체험관(사업비 400억원, '15~'17)과 진도의 국민해양안전관(사업비 270억원, '15~'17) 건립도 지자체 및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□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“피해지원 과정에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한분 한분에게 진정성을 갖고 지원사업을 실행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, “추모사업도 희생자 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, 지역 주민·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참 고

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상 피해지원사항 추진실적

| 항 목 | 지원 대상 및 내용 | 추진 실적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①생활 지원금 (해수부) | ○희생자·구조자가 속한 가구 ○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(1회) - 희생자 : 4인기준 259만원 - 구조자 : 4인기준 129만5천원 ○ 기간 : 1회 지급(5.20~11.19) - 6개월 이내 신청 | ○ 전체 447가구 중 441가구 지급신청(99%) - 435가구(97%), 930백만원 지급 |
| ②긴급복지지원 (복지부) | ○희생자가 속한 가구 ○ 기간 : 법시행 후 최대 6개월 * 법시행 전 지급 ○ 4인 가구 1,105,600원/월 | ○ 전체 277가구 중 275가구 지원 완료(99%, 716백만원) - 2가구 집행 중(10월말 종료예정) |
| ③교육비 (교육부) | ○ '14.4.16 당시 - 단원고 재학생 - 구조자 및 희생자·구조자의 직계비속·형제자매 중, 초·중·고·대학 재학생 ○ 지원기간 : 법 시행일로부터 1년(초중고), 2학기(대학생) 지원 | ○ 초중고 : 입학금·수업료, 학교운영 지원비, 교과용 도서구입비 - (단원고 재학생) 952명 1,304백만원 - (피해자 가족) 15명 24백만원 ○ 대학생 :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 - 63명, 207백만원 지원 |
| ④근로자 치유 휴직 (고용부) | ○ 근로자인 피해자 ○ 기간 :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/ 최대 6개월 휴직 | ○ 14개사 14명 치유휴직 신청 - 5명 휴직 완료 |
| ⑤고용유지 비용 (고용부) | ○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○ 기간 : 최대 6개월 * 휴직자 최대 월120만원, 대체인력 월60만원 | ○ 5개사 치유휴직자 고용유지 비용 16백만원 지원 - 2개사 지원 심사 중, 7개사 지원금 미신청(근로자 치유휴직 진행 중) |
| ⑥금융거래 협조 (금융위) | ○ 금융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○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협조 요청 | ○ 12개 금융기관에 협조요청('15.7월) * 원리금상환 유예 등 33건 금융부담 완화 요청 ○ 대출원리금 상환유예(3건) 지원 |
| ⑦아이돌봄지원 (여가부) | ○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자녀(12세 미만) ○ 지원기간 : 5년 (법 시행일 기준) ○ 아이돌봄지원법 준용 | ○ 신청자 없음 |
| ⑧의료 지원금 (복지부) | ○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생존자를 제외한 피해자 ○ 기간 : 법 시행일로부터 1년('16.3.28) ○ 기준 :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, 간병 또는 보조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| ○ 승선자 가족 등 의료비 지원 - 2,906건 240백만원 * 공단부담금 98백만원, 본인부담금 47백원, 비급여 95백만원 ※ 구조자 157명 1,101백만원(해운조합) |

| 항 목 | 지원 대상 및 내용 | 추진 실적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⑨심리상담 지원 (복지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자 및 가족 (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) ○ 기간 : 필요시까지 계속 ○ 정신질환 발견, 심리상담, 사회복귀 훈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안산 외지역 구조자) 일반인 구조자 80명에 대하여 심리지원 제공 (내소 71건, 방문 293건, 전화 304건) ○(안산 외지역 유가족) 일반인 희생자 및 실종자 41명의 가족 149명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(내소 87건, 방문 355건, 전화 1,017건) |
| ⑩안산 트리우마 센터 (복지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족 심리지원, 소아·청소년 심리 지원,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위탁·운영 ('15.1월 ~) ○안산지역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747명 (256가구), 일반시민 74명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(심리상담, 프로그램 운영 등) 중 |
| ⑪정신질환 등 검사·치료 (복지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자 및 가족 (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) ○ 기간 : 법 시행일로부터 5년 ○ 내용 : 의학적 검사·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(정신건강의학과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자가 의료기관(정신건강의학과) 방문시 검사·치료비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) 지원 - 2,425건, 464백만원 청구·지급 *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15백만원 |
| ⑫단원고 교육 정상화 (교육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○ 기간 : 법 시행일로부터 2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다목적체육관 건설 등 학교환경 개선, 전문상담기구(마음건강센터 등) 설치·운영,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|
| ⑬교직원 휴직 (교육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·16당시 단원고 재직 교직원 ○ 휴직기간 : 1년 이내(필요시 1년 연장) ○ 내용 : 휴직기간 봉급·수당 등 전액 지급, 경력평정 기간 및 승급기간 산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부 고시 제정('15.7.6) ○ 직원 1명 휴직 중('15.10.1~) ○ 단원고 교원 2명 특별휴직 신청 - 경기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 예정('15.10.15) |
| ⑭피해지역경제 활성화 (관계부처 합동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 강구·시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발굴 등 지원방안 마련 계획 |
| ⑮공동체회복 프로그램 (관계부처 합동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 ○ 내용 :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시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복합시설 건립관련 연구용역 추진 중(~'16.2월) |
| ⑯공동체 복합 시설 (관계부처 합동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산시가 국가와 협의하여 심리상담, 건강·복지·돌봄·노동·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 설치 | |